

美 제3국 수출 승인제도에 관한 견해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지난 8월 10일부터 이틀동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실무분과위가 개최되었는데, 특히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양국 방산업체대표가 참석하여 업체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한국측에서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수열 상근부회장과 주영일 해외사업부장이 참석하여 “미국정부의 제3국 수출승인제도에 관한 한국업체의 견해서” 발표를 통해 동의기한 설정 및 통제완화 등 본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업체의 견해에 대해 美 국방부측에서는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였으며, 현재 미국정부의 분위기로 보아 금년에는 美원산 한국산 방산품 제3국 수출에 대한 對美동의 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한국측이 발표한 견해서를 번역한 내용이다.
-필자 주-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미국방위준비 협회와 이번 방산기술협력위원회/안보협력위원회(DTICC/SCC)에서 업체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양국 정부에 감사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방위준비협회(ADPA)는 韓·美 방산업체간 협력사업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韓·美방산공동운영위원회(현재 각측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韓·美방산협의회로 개칭되었고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음)와 韓·美방산회의(약 300명 규모로 '86년부터 5회 개최되었음)를 통해 오랫동안 공동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협력이슈와 협력의 장애요소에 대하여 韓·美방산회의 및 韓·美방산공동운영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토의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반복 거론되고, 논란이 많았던 의제는 제3국판매에 대한 미국정부정책과, 절충교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이었다.

한국업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절충교역분야는 주로 미국업체를 위하여 절충교역(Off-set) 적용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적용대상사업을 감소시킴으로써 팔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제3국판매분야는 계속적인 토론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제3국 수출승인제도 및 기술사용료 양해각서 개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원산 한국 방산품의 수출은 미국정부의 사전동의를 받고 로얄티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로 인한 마찰과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1988년 8월 한국업체는 미국정부에 당시



▲ 한국측은 안보협력위를 통해 美원산 한국방산품의 제3국 수출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까지 밀려있던 로얄티로 316,045불을 지불하였다.

1989년 7월 韓·美국방장관은 기술사용료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동 양해각서의 기본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 양해각서에 수록된 100개 품목을 제3국에 판매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은 양해각서에 수록된 61개 품목을 판매할 경우 기술사용료 8%를 지불해야 한다.

양해각서는 1993년 8월에 82개 승인대상 품목과 기술사용료 부과대상 26개 품목으로 개정되었다.

제3국 수출에 대한 한국업체의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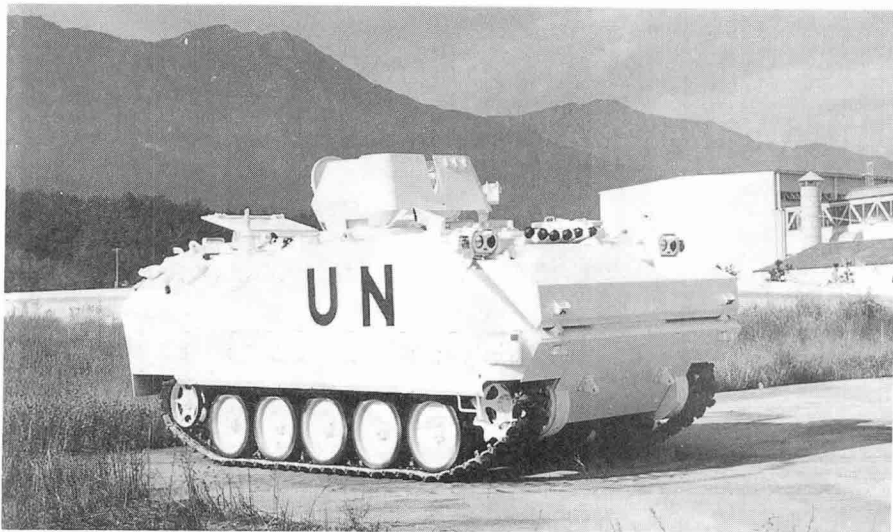
한국업체는 한국 방산품의 제3국 판매에 대한 對美동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양국정

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對美동의의 대상 및 기술사용료 부과 대상품목을 감소시킨 기술사용료 양해각서의 개정이 한국업체에 매우 고무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근 기술사용료 양해각서를 해석함에 있어 견해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美국 방부의 노력과, 특히 한국에서 미국원산방산물자의 생산근거와 관련된 부서간의 잘못된 관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과 성공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기술사용료 양해각서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미국측은 제3국 판매와 관련하여 그동안 쌓여온 다음과 같은 한국업체의 불만요소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제3국 판매요청에 미국정부의 무반응 또는 지연반응
- 미국정부의 사례별 승인원칙 고수
- 불판매보증서를 구매국정부가 미국정



◀ 사진은 말레이시아에 수출되어 UN군의 일원으로 보스니아 내전에 참전한 한국형 K-200전투 장갑차

부에 제출

—고율의 기술사용료

—제3국판매 대상장비가 오래된 기술로 제작된 장비라는 점에서 사전승인과 기술사용료 지불부과의 정당성(양해각서에 기술된 대부분의 품목은 개발년도가 20년전 이상이고 미국에서 생산 중단된 품목이 다수임)

한국업체는 1989년 기술사용료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다른 애로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對美동의절차는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통계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업체는 동의율이 저조함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동의율의 저조함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잠재적인 사업기회의 상실을 초래하는 무응답이나 지연된 응답에 대하여 더욱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美 정부는 주목하여야 한다.

무응답 또는 응답지연이 수출상담을 사실

상 봉쇄하고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정부의 시의적절한 회신이 없으면 수출업체는 납기를 약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거래를 진행시킬 수 없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판매자의 신용을 저하시켜 미국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는 다른 한국방산품의 수출거래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업체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사용료 양해각서는 미국산품목의 제3국수출시 미국정부의 사전 서면승인이 필요하며, 적절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양해각서의 기본정신은 「타당하면 승인하고 로열티를 받는다」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제3국판매 승인신청에 대한 미국정부의 응답이 1989년 기술사용료 양해각서 체결이후 전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한국업체는 납득하기 어렵다.

“무응답 또는 응답지연이 수출상담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판매자의 신용을 저하시켜 미국정부의 동의를 필요없는 다른 한국방산품의 수출거래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미국정부는 한국방산품의 수출목적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방산 수출을 보다 엄격히 통제할 목적으로 한국정부가 시행 중인 독특한 승인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수출업체는 잠재적 구매자와 특정수출상담을 개시하려 할때에도 예비승인이 필요
- 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요구서 입수시에만 수출허가
- 철저한 증빙서류 첨부
- 국방부에서 지정한 수출업체만 방산수출이 가능하며, 2년마다 수출업체 자격재심사

더구나 미국원산이 아닌 한국산 방산품목의 제3국수출시에도 미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업체는 이런 경우가 자신들의 잠재적 사업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외교목표를 추구하고 양국의 전통적이고 긴밀한 관계로 보아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과거 한국 국방부는 미국원산방산품인 경우 미국정부의 최종동의후 선적하는 조건으로 수출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최근('93. 10)에 한국 국방부는 방산품 수출에 대해 전보다 더욱 가혹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미국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을때까지는 국방부가 수출을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수출업체가 미국정부의 최종승인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납기를 맞추기 위한 사전생산 준비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체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93년 11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수출업체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제3국판매승인제도에 대해 앞에서 제시한 업체의 불만들을 재확인하였으며, 한국 국방부가 미국정부와 협의를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타당하면 승인하고 적절한 기술사용료를 받는다」는 기술사용료 양

▼ 국내 정비장에서 정비중인 미군 항공기



- 해각서의 기본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 미국은 승인 또는 불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 소요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발표해야 한다. (업체의 건의는 30일내에 임시 혹은 예비승인, 45일내에 최종승인으로 되어있음)
- 다음 협의시에는 양해각서 부록에 수록된 품목에 대해 승인 혹은 로얄티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정밀심사를 실시

한국정부측의 제3국판매동의신청에 대하여 YES나 NO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미국정부가 종전에 사용하던 매트릭스제도는 품목 및 국가 별로 녹색(승인 가능성 많음), 황색(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음), 적색(부동의 가능성 많음)으로 표시함으로써 현재의 기술사용료 양해각서보다 편리했다.

최근 어느 한국방산수출업체에서 미국정부정책에 반하여 승인을 받기위한 희망에서가 아니라, 승인이던 불가이던 그 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컨설턴트를 고용한 바있다.

이는 제3국판매승인 요청에 대해 장기간

소요되는 반응과정과 관련된 한국업체의 곤경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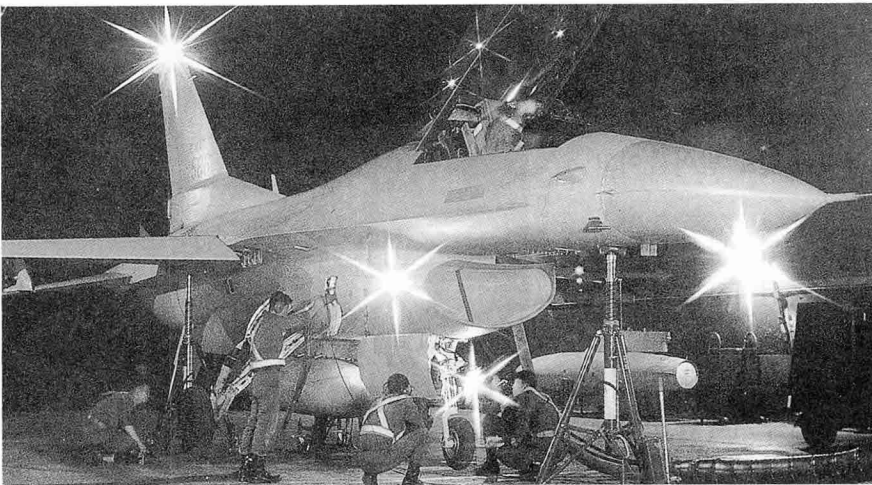
제3국 수출승인제도와 관련하여 반복되는 논쟁과 건의때문에 한국방산품 수출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나, 최근 수년동안 연간 방산품 수출실적은 1억불에도 훨씬 못미치며, 이는 국가 전체수출의 0.2% 미만이다.

'89년 수출이 1억불을 상회한 것은 주로 해군선박 수출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국의 모든 방산업체는 민간기업이다. 국내소요의 계속적인 감소와 가동률이 저하되는 시기(92년도 기준 기본병기 36%)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수출증대에 노력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업체는 이러한 수지악화를 핑계로 미국의 제3국수출승인제도를 무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개선, 특히 시기적절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업체들은 양국간에, 미국측에 유리한 대규모 군사교역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



◀ 한국업체들은 제3국 판매승인제도가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좀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KFP 사업기종인 F-16의 청정비)

최근 韓·美 양국간 거래액수

(단위 : 백만불)

구 분	'91	'92	'93
미국으로 부터 수입	18,894.3	18,287.2	17,928.1
미 국 에 수 출	18,559.2	18,090.0	18,137.6
수 지	-335.1	-197.2	209.5

자료 : 한국은행

실과 무시해도 좋은 한국의 수출규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한국의 제3국판매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최근 6년간의 군사교역현황('88~'93)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수출의 4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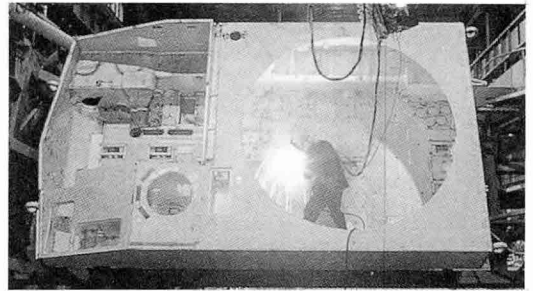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한국업체들은 국내수요 및 수출을 위한 방산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80년대말 양국의 전체무역은 美측이 적자였으며 군사거래도 전체무역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종종 지적되었다.

80년대말 미국의 무역적자는 로열티 양해각서에 대한 협상 및 한국측의 제3국수출승인 요청에 영향을 미친 1가지요소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양국간 거래는 위의 표와 같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 및 건의

한국업체는 미국의 제3국판매승인제도를 원칙적으로 이해하며, 동 제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업체들은 제3국 판매승인제도가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좀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M109A2 자주포 제조공정

한국업체는 양국정부의 개선노력이 계속될 것과 이에 는 다음사항이 포함될 것을 건의한다.

- 매 건별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승인 또는 부동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제3국 판매승인 기준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에 는 종전의 매트릭스제도가 참고될 것이다.
- 양해각서에 나열된 품목에 대해 정밀 심사
- 기술사용료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 불판매보증서를 한국정부가 획득하여 미국정부에 제출토록 개선
- 승인요청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절차 수립

제3국 수출 승인 제도의 개선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美 정부의 승인과정을 단순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과 승인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